

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

구 미 시

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15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제정 당시(1995년경)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폐한 영세 노점상의
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업자금융자를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
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으나,
나. 당시 목적이 현실과 맞지 않을 뿐 아니라, 도로법상 불법행위로서 단속대상
이되므로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코져 함.

2. 주요내용

「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」 폐지

3. 조례안 : 붙임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폐지조례안

「구미시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」는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도로과
입 안 자	과 장	박희철
	담 당	구춘서
	담 당 자	한상우 (480-5453)